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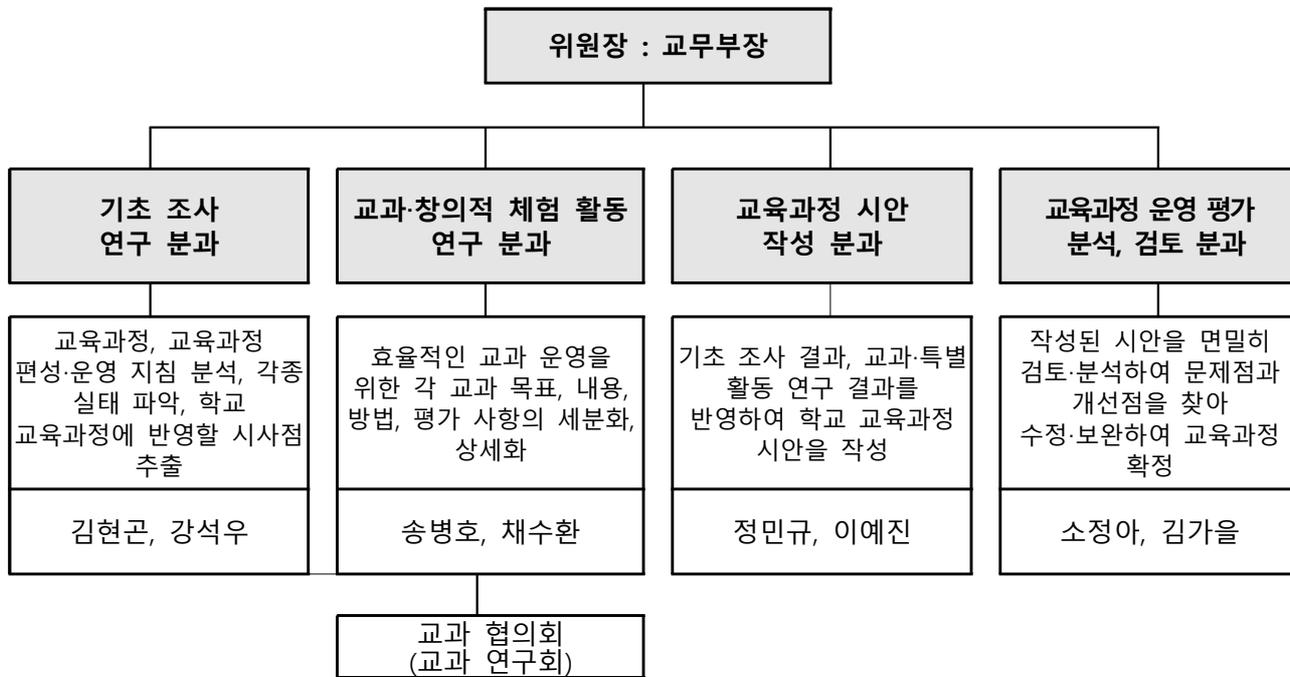
제정 2025. 3. 4.
개정 2025. 4. 1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각 교과협의회장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시에는 연구부장을 간사로 두어 협의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3조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역할 및 임무)

-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각 분과는 상호 유기적인 보완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과협의회'를 자문기구로 두어, 필요에 따라 각 조직의 대표 혹은 전체를 위원회의 협의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 작성 및 확정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활동(기초 조사 자료 및 문헌 제공 등)
4.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연수 실시
5.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운영 계획안의 문제점 검토 및 확정
6. 효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마련
7.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
8.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사항

제4조 (교과협의회 등)

- ① 위원회에는 창조적 인재교육과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외국어과, 과학과, 예체능과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교과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 ② 각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의 또는 심의하여 위원장에게 건의하여 시행한다.
 1. 교과 교육의 목표설정
 2. 교과 교재개발
 3. 교과 수업 방법의 개선
 4. 교과목 평가 방법의 개선
 5. 기타 교양 교육과 관련된 사항
 6. 전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반 시설 개선 및 확충
- ③ 각 협의회장은 본교 내의 해당 교과 교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는 서면, 전자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한다.
- ③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와 교과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 (선택과목 운영)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7조 (수강 신청 절차)

절차	세부 내용	시기
1. 사전 수요 조사	교육과정 설명회 진행	3월~4월
	모든 교과목 대상 1차 사전수요조사 진행	4월
	1차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수강 신청 대상 과목 1차 선정	4월~5월
	선택 과목 탐색 및 과목 선택을 위한 상담 주간 운영	5월
	1차 선정 수강 신청 대상 과목 대상 2차 사전 수요조사 진행	5월
	2차 선정 수강 신청 대상 과목 대상 3차 사전 수요조사 진행	6월
	3차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수강 신청 대상 과목 확정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한 과목 안내 및 진로·학업설계지도	6월 7월
↓		
2. 수강 신청	1차 수강 신청	7월
	1차 수강 신청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설과목 이수 단위 협의	8월
	2차 수강 신청	9월
	2차 수강 신청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설과목 이수 단위 확정	9월
↓		
3. 수강 신청 정정	수강 신청 정정 기간 및 절차 안내	9월
	수강 신청 정정 기간 운영(1,2차)	9월~10월
	교과서 주문	10월
	선택과목별 수강반 수, 수업시수, 교원 정원 확정	11월
	차년도 교육과정 확정	11월
	최종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운영(3차)	12월~종업일 전일
↓		
4. 수업 운영 준비	수업 반 편성	12월
	수업시간표 작성(학생별, 교사별, 교실별)	1월
	수업 운영 준비	2월

제8조 (선택 과목 개설 및 폐강)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① 학교가 개설할 수 있는 선택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제시된 교과목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한 과목
 3. 학교가 필요에 따라 개설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과목
 4. 타시도교육감이 인정한 과목(고시 외 과목)
- ② 선택과목은 학생 대상 선택과목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설한다.
- ③ 해당 학년 인가된 학급당 학생 정원의 60% 이상의 학생이 신청한 경우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위 ③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학교 교육목표 등이 추구하는 바에 부적합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교과목의 편성·운영이 법령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위배하는 경우
 2. 수업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⑤ 해당 학년 인가된 학급당 학생 정원의 60%미만일 경우의 과목 개설 여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신청 인원		
3명 이하	4명 이상 ~ 5명 이하	6명 이상
폐강	교과협의회 논의 후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	개설

- ⑥ 학년말에 수강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개설에 유효한 수강신청 인원이 변동될 때에는 본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⑦ 학교는 위 ④항의 이유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설이 불가한 사유를 학생에게 안내하고, 희망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제시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제9조 (선택 과목의 변경)

- ① 학생 선택 과목은 수강 신청을 실시하여, 10월 말까지 학생, 학부모의 '최종 수강 신청 확인서' 제출을 통해 확정하고, 교과서 주문, 수강 반 수 결정,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② 선택 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 학생의 진로 변경, 수강 신청의 중대한 실수 등 과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①항의 수강 반 수,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허용 기간은 해당 학년 종업식 전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③ ②항에 따른 선택 과목의 변경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절차	세부 내용
1. 학생의 과목 변경 희망	학생의 진로, 진학 및 적성에 관련해 과목 변경에 대한 심층적 고민 필수
↓	
2. 선택과목 변경 희망원 작성	담임교사, 교과교사, 학년부장 및 진로교사 등과 최소 2회 이상의 상담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사와의 상담 담임교사가 학부모 동의 여부 확인(대면 또는 통화) 학생이 변경희망원에 학생, 학부모 서명을 하며 희망원 작성
↓	
3. 선택과목 변경 희망원 제출	선택 과목 변경 희망원을 담당 부서(교육과정부)로 제출
↓	
4. 결과 안내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검토 및 학교장의 허가 선택과목 변경 가능 여부를 학생에게 안내 학생과 학부모의 서약서 제출

- ④ 위 ③항의 절차를 거쳤어도 편성된 반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학교의 필요에 따른 과목 변경)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에게 수강과목의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

- ① 교육과정 담당 부서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
- ② 학생과 학부모 면담 및 변경 요청서, 동의서 등의 징구
- ③ 학교장의 승인

제11조 (공강관리)

학교는 학생의 과목 선택시 공강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이 공강 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장소와 담당 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① 공강 지도 교사는 수업 시수가 적은 순으로 배정
- ② 공강 지도 교사의 공강 지도는 수업 시수의 1/2 시수로 인정
- ③ 학생은 학교(지도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자기주도학습 및 교내 활동 등에 참여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전체 교사 대상 의견수렴과 교과별 협의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위원회 재적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통해 개정한다.

제2조

- ① 본 규정은 공포한 날(2025년 3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공포한 날(2025년 4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